



문서번호	청소행정과-5097
결재일자	2015.3.1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112호

주무관	청소작업팀장	청소행정과장	주민생활국장	부구청장
이승근	김용섭	박사채	박기웅	03/11 이비오
협조	기획예산과장 ★법제팀장 법률전문관	代나재진 이상수 원종배		

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계획

2015. 3.



성 동 구
(청소행정과)

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계획

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수년간 동결되어온 낮은 종량제봉투 가격 등의 문제점이 있는 현행 대행체계의 개편을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

I 개정근거

- 지방재정법 제15조(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) 및 제34조(예산총계주의 원칙)
-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체계 개선 계획('15. 1.)

II 개정사유

- 현행 대행업체 운영방식인 '독립채산제'(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세입조치 없이 대행업체 운영비로 충당)는 지방재정법 위반
 - ▶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재정법 위반 해소
- 쓰레기 감량을 위해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필요성 증대 및 쓰레기 수집·운반·처리비 대비 주민부담 불균형으로 구 재정부담 가중
 - ▶ 종량제봉투 가격을 서울시 표준안(공통가격)에 의거 2단계에 걸쳐 단계적 인상

III 주요내용

- 종량제 수수료 예산편입 근거규정 마련(제29조 1항)

기 준	변 경
폐기물의 수집운반료는 해당폐기물을 수집·운반·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하며, 폐기물의 처리비는 폐기물을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한 자가 부담한다.	폐기물의 수집·운반 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하며, 그 처리비는 구에서 부담한다.

■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

1.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

가. 가정용

(단위 : 원)

구 분	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 봉투 (가정용)		
	기 준	변 경	
		2015년	2017년부터
5ℓ	90	120	130
10ℓ	180	220	250
20ℓ	350	440	490
30ℓ	520	660	740
50ℓ	860	1,100	1,250

나. 영업장용

(단위 : 원)

구 분	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 봉투 (영업장용)		
	기 준	변 경	
		2015년	2017년부터
20ℓ	470	470	520
30ℓ	700	700	780
50ℓ	1,160	1,200	1,330
75ℓ	1,740	1,800	2,000
100ℓ	2,330	2,400	2,680

다. 사업장용

(단위 : 원)

구 분	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 봉투 (사업장용)		
	기 준	변 경	
		2015년	2017년부터
20 ℓ	480	720	800
50 ℓ	1,210	1,800	2,000
100 ℓ	2,420	3,600	4,000

2. 생활폐기물용 특수 종량제봉투 가격

(단위 : 원)

구 분	생활폐기물용 특수 제 봉투 (사업장용)		
	기 준	변 경	
		2015년	2017년부터
50 ℓ	2,790	4,590	5,100

IV 추진일정

- 2015. 3. 5. ~ 3. 10. 조례 개정 계획 수립 및 규제심사, 부패영향 평가
성별영향분석 평가
- 2015. 3. 12. ~ 3. 31. 입법예고
- 2015. 4. 1. ~ 4. 6. 입법안 작성, 비용추계작성, 숙독회의
- 2015. 4. 7. 조례규칙심의회 상정
- 2015. 4. 21. 조례안 217회 임시회

V**행정사항**

- 주개정안 입법예고 - 공보담당관
- 개정안 규제 및 법제심사, 개정 관련사항 협조 - 기획예산과
- 부패영향평가 - 감사담당관
- 성별영향분석평가 - 보육가족과

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